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1.25.)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 10.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조례 제2679호(시행 2021. 9. 29.)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전 사업허가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소급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함(안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 1) 현행 :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변경 :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본문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17. ~ 12. 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2021. 9. 29. 개정된 거창군 계획조례 부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 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업허가를 득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정하여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의 신뢰 확보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p>	<p>부칙(조례 제2679호 시행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p>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1. 10.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인 거창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군수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정함(안 제4조)

1) 지원계획 심의기구 변경 :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 먹거리 위원회

다. 거창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를 정함(안 제9조)

마.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신설함(안 제10조)

바. 거창푸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7조)

1) 신설 :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의 홍보·지원

2) 검사비용 지원, 인증신청,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표시, 인증취소 등

사.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18조)

아. 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정함(안 제19조)

자.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안 제20조)

차.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정함(안 제21조)

1) 거창푸드 인증 등의 정보 제공

카.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법령 재기재 규정 등 삭제

1)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현행 제5조~제14조)

2) 거창푸드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등(현행 제21조)

3) 사용자 지정 및 마일리지 제공(현행 제27조)

4) 위탁운영의 세부내용, 위탁취소, 시행규칙(현행 제29조·제30조,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예산 387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1. 10. ~ 11.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 기준 확대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거창푸드 인증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인증제도 활성화와 인증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며, 법령 재기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인증제도의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푸드(Geochang Food)”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친환경적 방법으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산물
 -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생활 교육·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소비주체로서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식품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창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거창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3. 거창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인증
5. 거창푸드 품질관리
6. 그 밖에 거창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거창푸드 생산) ① 거창푸드 생산은 소량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육성과 건전한 생산자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거창푸드 가공) ① 거창푸드 가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과 산업·학교·연구소가 상호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해야 한다.

제7조(거창푸드 유통) ① 거창푸드 유통은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거창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거창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거창푸드 소비) ① 거창푸드는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급식에 우선 소비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 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거창푸드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
2. 거창푸드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
3. 인터넷을 통한 거창푸드 홍보와 판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증 신청 등) ① 군수는 거창푸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인증제를 실시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은 농산물,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세부 품목 및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원활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다.

1.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

2.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식품 시료 채취

② 인증심사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 여부

2. 인증표시 정지 및 인증취소

3. 그 밖에 인증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푸드업무 부서장

2.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표시) 인증식품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하고, 그 표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인증표시 정지,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인증식품의 품질과 생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증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인증의 홍보·지원) ① 군수는 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거창푸드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에 대한 교육
2. 인증식품 소비촉진 및 판로확보
3. 인증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군수는 센터 및 거창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푸드 상품화, 선전, 판매, 운반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체험농장 및 농업인 직거래장터) ① 군수는 군의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거창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거창푸드 등을 판매하는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거창푸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거창푸드 관련 정보·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1조(거창푸드정보시스템) 군수는 군민에게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과정과 인증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푸드종합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1. 10.
-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신여 산림과장]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치 :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다. 사업비 : 87,809천원(국 43,904, 도 13,171, 군 30,734)
- 라. 사업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숲 교육 등 대체프로그램 운영
- 사. 위탁기간 : 2022. 3. ~ 12.(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평가환류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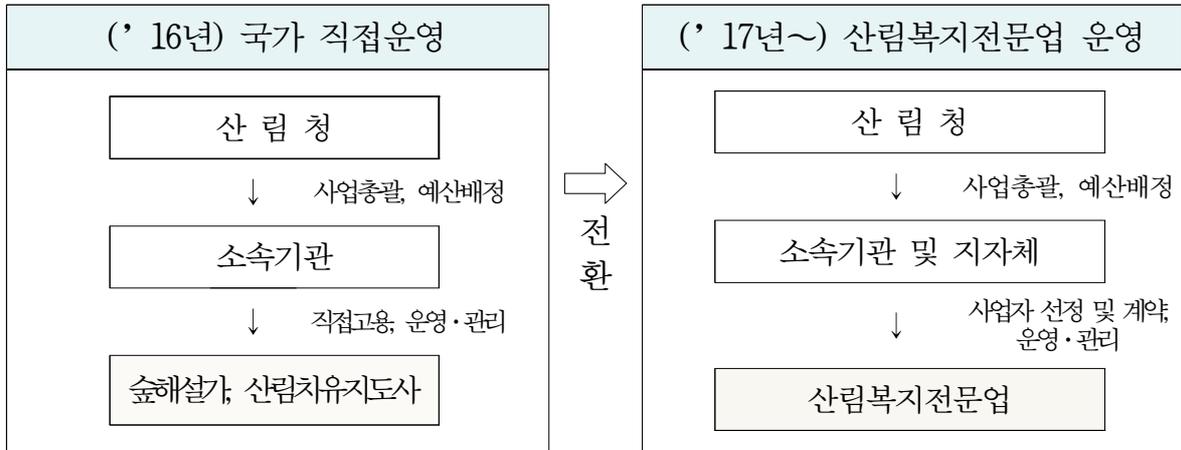
가. 2021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 운영실적

- 운영기간 : 2021. 4. 20. ~ 12. 31.
- 장 소 : 향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 대 상 : 유아에서 노인 등 신청하신 분은 누구나 가능
- 인 원 : 20명 이내(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 위탁기관 : 소리나무숲 주식회사(대표 장은하)
-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숲해설가(1인)·산림치유지도사(2인) 자율 진행
- 참여인원 : 총4,239명(숲해설 1,703명, 산림치유 2,536명)
-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예약, 당일 현장모집
- 체 험 료 : 숲해설 무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프로그램 :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숲 해 설 : 주5일, 일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산림치유 : 주6일, 일2회(09:30~12:00, 13:30~16:00)
- ※ 계절별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 세외수입 : 금33,379,220원(산림치유)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미영)

- 본 동의안은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능력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전문가와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들이 치유의 숲 이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관련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